

# 시·군 도로 중장기 계획없이 건설

## 상당수 즉흥적인 선심성 추진 페널티 등 제재 조치도 없어

도내 시·군 상당수가 지역 내 도로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현행 도로법상 도와 시·군 등 도로관리청은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나 시·군도 등을 담당할 시·군의 경우

춘천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의명을 원한 한 공공기관 연구원은 “계획을 세우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지자체의 공약 사업과 배치될 수 있다 보니 사업 편의를 위해 꺼리는 게 속사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지적해야 할 지방의회도 민원성 도로 청탁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 보니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각 시·군은 도로 건설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표를 얻기 위한 즉흥적인 건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관련법에는 관리계획 미수립 시 페널티 등 제재 조치가 없고 도 등 상급기관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시·군 도로 건설에 국비나 도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했다. 류재일기자

### ■도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이름 가나다순)

의회 운영	△위원장=오세봉 △부위원장=최성현 △새누리당=김연동 김용복 남평우 신영재 유정선 장석삼 △더불어민주당=박윤미 이종주
기획 행정	△위원장=장세국 △부위원장=신영재 △새누리당=김시성 안상훈 오세봉 원강수 임남규 최성재 △더불어민주당=정재용
사회 문화	△위원장=조영기 △부위원장=유정선 △새누리당=권석주 권혁열 김기철 이정동 장석삼 △더불어민주당=구자열
농림 수산	△위원장=진기범 △부위원장=김용복 △새누리당=김금분 김기홍 남평우 신도현 심영근 △더불어민주당=한금석 △무소속=심영섭
경제 건설	△위원장=박길선 △부위원장=박윤미 △새누리당=김규태 박현창 최명서 최성현 함종국 홍성욱
교육	△위원장=남경문 △부위원장=김연동 △새누리당=곽영승 김성근 김용래 오원일 이문희 △더불어민주당=강청룡 이종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직임	

# 경찰 총경급 266명 인사 단행

## ▶프로필 9면

경찰청은 7일 동해서장에 김희중 강원청 형사과장을 발령하는 등 총경급 266명에 대한 하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태백서장에 류성호 112종합상황실장,

속초서장에 김종철 여성청소년과장, 정선서장에 김진태 총남청 여성청소년과장, 홍천서장에 김택근 강원청 생활안전과장, 평창서장에 박동현 경비교통과장, 횡성서장에 서완석 강원청 정보화장비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강원청 경무과장에 이규문

평창서장, 정보화장비과장은 구자용 경북청 영양서장, 112종합상황실장에 이하배 총경, 생활안전과장에 김영진 총경, 여성청소년과장에 임만석 총경, 수사1과장에 김동혁 총경, 형사과장에 김진환 정선서장, 경비교통과장에 정광복 총경, 올림픽기획단장에 김성재 총경 등이 발령됐다. 이종규 태백서장은 인천청 여성청소년과장, 김숙진 홍천서장은 경기북부청 경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택수 평창올림픽기획단장과 이혁 수사1과장은 총경 교육에 입소한다. 홍순광 경무과장과 안승일 동해서장, 박성수 속초서장, 이병하 횡성서장 등은 이번 인사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최기영기자

야하! 그렇구나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과 감액

공사도급계약에는 대부분 지체상금 약정이 포함돼 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체상금은 수급인인 원고자 건물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6590 판결 등).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준공기한이 도과한 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약정한 준공기한을 도과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약정도 효력이 없다고 보지만(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5901, 15918 판결), 이 점에 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기 전에도 약정 준공기한 내에 공사준공이 불가능한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이상, 지체상금 약정이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지체상금을 감액한 사례를 보면, 약정 준공기한으로부터 147

일 늦게 공사를 완공하여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액수가 85,458,450원인 사안에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급인이 도급인 측의 소개로 석공사 하도급업자를 선정하였는데, 그 하도급업자가 현장에 반입한 대리석의 질이 견본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도급인이 시공을 반대하여 제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석공사 시공이 지연되고 결국 전체 공사가 지연된 사정, 건축기간 중 건축업계 전반에 걸쳐 도급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한 극심한 자재의 공급 부족과 인력난이 발생하여 그 영향으로 자재 및 인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점을 참작하여 지체상금액을 30,000,000원으로 감액한 사례(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약정 지체상금률이 1/1000이고 공사완공이 218일 지체되어 약정 지체상금이 414,268,048원인 사안에서, 도급계약상의 조건이 도급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정해져서 공사대금의 변동이 어렵게 돼 있고, 공사규모에 비하여 공사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공사기간 당시 소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인하여 수입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여 수급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180,000,000원으로 감액한 사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이 있다.



이웅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강원지역 건설수주 증가세 전환

도목중심 공공 강세  
5월 5436억원 기록  
작년보다 244.7%나 늘어  
대형 프로젝트 거의 끝나  
올 전체 실적은 감소할 듯



최근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강원 지역 건설 수주액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도목을 중심으로 공공 수주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발주물량이 감소세에 있어 수주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월 동북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강원지역 수주액은 5436억74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보다 244.7% 증가한 수치다. 강원지역 수주액은 올 1월 77.2% 증가로 출발했지만 이후 매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월에는 1306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해 전년 2월보다 34.4% 줄었다. 3월(2629억원)과 4월(2932억원)에도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와 26.2% 수주액이 떨어졌다. 하지만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수주액

이 증가하면서 4개월 만에 '수주액이 늘었다. 5월 강원지역의 공공부분 수주액은 3915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278.2%가 증가했다. 동북통계청은 "공공 부문에서 상·하수도, 광만·광항, 토지조성 등의 수주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공공별 수주액을 보더라도 5월 도목수주액은 3282억41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0.9%가 급증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신규주택 등의 수주가 늘어나면서 5월 수주액이 전년 동월 대비 180.6% 증가한 1521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강원지역 건설수주 여건이 완전히 살아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다소의 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올해 전체 건설수주액이 지난해보다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원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에 따르면, 국내 주요 8개 공공기관들의 하반기 발주 물량이 최대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공공 발주 의존도가 높은 도 건설업계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선전하고 있는 주택 등 민간부문도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대형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 다음 터키리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공정위, 하도급 분쟁조정 기간 '60일→90일' 연장

하도급 분쟁조정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등의 개정에 따라 하도급 분쟁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분쟁조정 기간을 90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정기간 연장에 따라 당사자 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조정을 통한 권리 구제가 늘어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송과 달리 분쟁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비용과 시

간을 절약할 수 있고 거래가 끝나기 전 당사자가 합의하면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파산청인의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되면 법외 잔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면제됨에 따라 조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 간 계약서 작성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도록 권장했다.

박경남기자 knp@